第144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11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2月12日(火)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韓國勞動硏究院法案(政府提出)
2.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3.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薰議員外 57人 發議)
4.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5.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鄭貞薰·李仁濟·盧武鉉議員外 57人 發議)
6.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7.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薰議員外 57人 發議)
8.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9.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盧武鉉·李仁濟·鄭貞薰議員外 57人 發議)
10. 最近勞使紛糾등懸案報告

審査된案件

1. 國務委員(勞動 張永喆)人事…… 1面
2. 最近勞使紛糾등懸案報告…… 3面

(15時40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1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합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立法調査官 柳盛薰 報告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金令培 지금 報告事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勞動委員會 委員으로 계셨던 張永喆 委員과 南載熙委員이 勞動委員을 辭任하시고 그 後任으로 金政吉委員과 李在冕委員이 當委員會 委員으로 補任되어 오셨읍니다.

그런데 이 두분중 金政吉委員이 나오셨읍니다.

金政吉委員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政吉委員 金政吉委員입니다.

저는 평소 勞動委員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國務委員(勞動 張永喆)人事

(15時42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여러 委員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새로 赴任하신 勞動部長官께서 오늘 처음 나오셨읍니다. 張永喆勞動部長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光玉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平民黨 韓光玉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새로 이 자리에 나오신 張永喆長官에 대한 인사를 받기 전에 이런 議事進行發言을 하게 되었읍니다. 個人的으로 보면 엊그제까지 다같은 同僚委員으로서 長官의 물망에 올랐다는 자체부터 축하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國政을 論議하는 마당에서 사사로운 情보다는 엄격한 원리와 法秩序를 확립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議事進行發言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憲法 第86條에 따라서 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憲法 第87條에 따라 보면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2月5日 政府가

一方的으로 발표한 改閣은 이러한 憲法節次를 全的으로 무시하고 지난 軍事獨裁治下에서 慣例化된 違憲的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과거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軍事獨裁治下에서 國務總理가 憲法에 의해서 任命되지 못하고 또 國務委員도 그와같은 合法的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 마치 慣例化가 돼서 法的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 汚染됐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더러운 것을 모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民主化의 時代에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특히 과거 軍事獨裁의 政治文化를 淸算하고 5共非理를 淸算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淸算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盧泰愚大統領은 國法秩序를 지켜야 된다. 또한 社會의 안정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마는 大統領 스스로가 이와같은 法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유감된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法이라고 하는 것이 上層部에서부터 지켜 줘야지 國民이 따라주는 것이지 上層部는 法을 무시하는데 무조건 國民보고 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思考方式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平和民主黨은 國會의 同意를 받지 아니한 國務總理署理에 의해서 추천된 國務委員의 자격에 관하여 論難의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當 委員會에 출석한 張永喆議員의 長官으로서의 인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만일 인사를 받는다면 長官의 자격이 아닌 個人的인 차원에서 인사 받을 수 있음을 거듭 밝혀둡니다.

委員長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令培 金東仁委員 發言하십시오.

○金東仁委員 本委員은 분명히 오늘 이 勞動委員會 會議가 勞動部의 業務報告부터 먼저 받기로 하고 開會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勞動部長官이 자격이 없고 오늘 인사가 없다면 오늘 會議를 散會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委員님들 意見이 없으십니까?

金在光委員님 發言하십시오.

○金在光委員 지금 韓光玉委員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더우기 이것은 韓光玉 勞動委員會 委員의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平和民主黨의 의사로 간주될 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現職長官 문제를 놓고 우리가 曰可曰否하는 것 보다도 일단 停會를 하시고 우리끼리 懇談會를 잠깐 갖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지금 金在光委員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協議를 하기 위해서 잠깐 停會를 하겠읍니다.

(15時50分 會議中止)

(16時2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續開를 宣言합니다.

방금 전에 韓光玉委員께서 長官의 인사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의 發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停會를 해서 여러가지 意見調整한 바가 있읍니다. 그에 따라서 委員長이 行政府에 대한 촉구를 해야 되겠읍니다.

韓光玉委員께서 發言하신 근거는 憲法 第87條1項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점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法律上 얘기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行政府가 이러한 愚를 다시는 범하지 안 하도록 委員長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發言하신 韓光玉委員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러 委員님들께서 또 이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張永喆長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존경하는 金令培委員長님 그리고 勞動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月5日 政府의 人事命에 따라 그동안 委員長님을 모시고 여러 委員님들과 함께 몸담았고 勞動委員會에서 勞動部長官으로 任命을 받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이끌어 주신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은 勞動行政의 重責을 맡고 보니 두

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여러 委員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앞으로 저는 勞使關係의 확립을 위하여 勞使對等의 원칙과 勞使自律의 원칙이 하루속히 經濟社會에 뿌리 내리도록 勞動施策을 펴나가겠읍니다.

이를 위해 勤勞者 福祉施策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勤勞者의 社會的 經濟的 지위를 향상시키고 또한 勞組의 自律性을 提高하기 위한 行政的 支援을 아끼지 않겠읍니다.

이와같은 施策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委員님들과 항상 의논을 드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9年度 豫算審議過程에서 職業訓練生 給食費 勤勞者 賃貸아파트 建立費 勞動監督官의 活動費 등의 豫算을 大幅 增額하여 주신 여러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뜻을 받들어서 모든 施策을 보다 效率的으로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먼저 여러 委員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읍니다. 이 앞에 議事日程의 揭示를 보시다시피 政府提案 法律案인 勞動硏究院法案 이것을 비롯해서 9個의 法案을 上程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4黨間의 意見을 조절할 부분이 있읍니다. 그런 사정으로 해서 10項으로 되어 있는 政府懸案報告를 第1項으로 바꾸어서 議事日程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지요?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

2. 最近勞使紛糾등懸案報告

(16時30分)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最近勞使紛糾등懸案報告를 勞動部로부터 듣겠읍니다.

勞動部長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勞動部長官입니다.

존경하는 金令培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主要懸案勞動問題에 대하여 報告드리고 委員님 여러분들의 高見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今年들어 新規設立 勞動組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勞使紛糾 件數는 昨年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드는 점을 볼때 勞使가 공히 法의 테두리內에서 勞使問題를 해결하려는 慣行이 차츰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보겠읍니다. 아직도 여러 委員님께서 國政監査時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진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은 緩急을 가려서 改善해 나가겠읍니다만 委員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油印物에 의거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企劃管理室長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李海瓚委員 진행하기 전에 한가지… 지난번에 오늘 常任委를 할적에 現況報告 들을 적에 80年度 解雇勤勞者들 問題하고 三星重工業을 중심으로 한 勞組設立問題 이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委員長 金令培 報告를 듣고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報告해 주세요.

○勞動部企劃管理室長 鄭東佑 企劃管理室長 鄭東佑입니다.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報 告)

目 次

1. 最近의 主要動向
2. 主要事例
가. 三星重工業㈜ 勞組關聯紛糾
나. 政府出捐硏究機關 勞動爭議
다. ㈜文化放送 紛糾
라. 大成炭座開發㈜ 聞慶鑛業所 勞使紛糾
마. "紛糾關聯 廢業"事例 精密調査 結果

1. 最近의 主要動向

○ 勞使紛糾

－'88.12.10現在 1,800件 發生(前年同期 3,965件)

· 解 決 : 1,747件(97.5%)

· 進 行 : 53件(2.5%)

(原因別)

計	賃金引上	勞動條件改善	團體協約	解雇및不當勞動行爲	其他
1,800件	941	129	294	162	274
(100.0%)	(52.3)	(7.2)	(16.3)	(9.0)	(15.2)

(業種別)

計	運輸業	製造業	鑛業	其他
1,800件	800件	766件	41件	193件
(100.0%)	(44.4)	(42.6)	(2.3)	(10.7)

(進行中)

計	製造業	運輸業	鑛業	其他
53件	20件	17件	1件	15件
(100.0%)	(37.8)	(32.1)	(2.0)	(28.1)

○ 主要特徵

－勞動爭議發生申告는 '88.10月末 現在 1,784件('87年 72件)으로 法節次에 따라 紛糾를 解決하려는 傾向이 增加되고 있으나 勞使雙方의 不法的 實力行使가 殘存하고 있음.

－賃金交涉은 '88.11.30現在 100人이상 對象業體의 91.1%(前年同期 91.0%)인 6,029個業體에서 妥結되었으며, 平均賃金引上率은 13,5%('87年 17.2%)로 나타나고 있음.

－勞動組合은 昨年 6·29宣言 當時 2,725個였으나 今年 6月末 現在에는 約 86%가 增加된 5,062個로 계속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旣存 產別勞聯이 分離되는 등 勞動界의 部分的인 組織改編이 展開되고 있음.

－또한 一部 勞動組合에서는 그간 勞使間의 團體交涉 過程에서 主要 爭點이었던 賃金引上 勞動時間 短縮등과 같은 事項外에 職制改編 人事權參與 其他 經營民主化 要求등 多樣한 事項을 提示하는 傾向이 있음.

－全般的으로 지난해 이후의 紛糾經驗에 따른 勞使兩側의 自覺과 向上된 勞使問題 解決能力이 勞使關係安定에 점차 肯定的으로 作用하고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2. 主要事例

가. 三星重工業㈜ 勞組關聯紛糾

〈事業體 概要〉

○所 在 地
- 慶南 昌原：1工場(機械)
- 慶南 昌原：2工場(重機)
- 慶南 巨濟：巨濟造船所 (船舶建造修理)

○代 表 者：최 관 식
○業 種：船舶建造修理業
○勤 勞 者 數：1工場 3,070名 2工場 1,450名 巨濟造船所 2,760名
計： 7,280名
○勞動組合長：김무연(勞組員：當初 18名 '88.6.2 設立)

〈勞動組合 設立申請書 交付內容〉

○勞動組合 設立申請書 3個 接受
- 慶南道('88.6.2)：김무연등 18명
- 昌原市('88.6.2)：구용회등 4명
- 勞動部('88.6.3)：위재학등 9명

○接受順序에 따라 慶南道에 接受된 김무연에게 勞動組合 設立 申告證 交付

〈紛糾經緯〉

○'88.11.14부터 위재학등 11명이 韓國勞總 事務室에서 三星重工業 御用勞組 解散을 要求하며 籠城
○11.17부터 三星重工業㈜ 巨濟造船所 勤勞者 300여명이 同調籠城
- 11.23 籠城 反對勤勞者 700여명이 會社 正常化推進을 要求하며 蹶起大會를 開催하는등 組織紛糾가 계속

○11.29 現地 籠城에 合流하기 위하여 거제에 와있던 위재학이 同僚 3名과 함께 籠城場을 떠나 上京하는 도중에서 同社 社員의 制止를 받자 所持하고 있던 少量의 취약을 먹어 대우옥포병원에 移送되어 加療받는 事件이 發生
○12.1 昌原工場 勤勞者 40여名이 백찬기議員 事務室 屋上에서 籠城하다가 12.2 解散
○12.3. 09：00 勤勞者 300여名이 統一民主黨 巨濟地區 廳舍앞에서 籠城 同日 11：00 歸事
- 籠城에 同調하지 아니한 勤勞者를 暴行한 罪로 拘束된 勤勞者 2名의 釋放要求('88.12.7 釋放)
- 위재학의 拉致 및 檢問所 勤勞者 處罰要求

○12.9 韓國勞總(金屬勞聯)은 三星本館앞에서 糾彈示威
○12.10現在 旣存勞組調合의 組合員數가 420名(昌原1工場155, 2工場 105, 巨濟造船所 160)으로 擴大되었으며 巨濟造船所에는 위재학支持勤勞者 約 200名이 繼續 籠城中

〈措 置〉

○管轄 行政官廳인 慶尙南道知事에게 다음事項 指示(11.28)
- 勞組調合 運營實態調査 問題點 導出하여 紛糾 收拾
- 組合員의 自主的 民主的인 勞動組合 運營 指導
- 勤勞者의 勞動基本權 保障

○管轄地方勞動官署(釜山廳·馬山·忠武)에 業務指示(11.28, 11.30)
- 同社 勞組關聯紛糾의 顚末 調査報告
- 不當勞動行爲 與否 調査處理
- 慶南道와 協調 積極的 紛糾 收拾

※ 地方勞動官署의 調査結果 紛糾原因
· 事實上 勞組活動 不履行
· 自由로운 勞組加入을 制限

〈指導方向〉

○非民主的 勞組運營事項은 是正되도록 行政指導
- 勞組의 門后를 開放 加入希望者 全員加入
- 組合員 總意에 의한 民主的 勞組運營이 되도록 指導

○ 不當勞動行爲 發見時 依法措置

나. 政府出捐硏究機關勞動爭議

〈槪要 및 紛糾의 背景〉

○ 背景
- '88.11.11 全國 硏究專門 技術職 勞組協議會(34個) 所屬 10個 政府出捐 硏究機關은 "共同爭議 對策委員會"(代表 : 윤윤규 KDI組合長)를 結成하고 團體交涉 進行中
政府가 同 硏究機關에 대한 '89 賃金引上率을 定期昇給分包含 3%以內에서 抑制할 方針임을 표명하자 이에 반발 紛糾發生

○ 主爭點
- '89賃金引上率 9.7%(승급분 제외)
- 硏究所의 民主的 自律的 運營 및 不必要한 規定 改廢

〈紛糾內容〉

○ 勞動爭議發生申告(6個勞組)
- 11.26 : 韓國人蔘煙草硏究所
- 12. 2 : 韓國開發硏究院 産業硏究院 精神文化硏究院 韓國科學技術硏究所
- 12. 5 : 韓國電子通信硏究所
※ 共同對策委員會 參加 其他勞組(4開所)
- 現代社會硏究所 韓國女性開發院 史學硏究所 大韓商工會議所

○ 12.6 同 共同對策委員會에서 聲明書 發表
- 12.12~13間 全勞組員(6,000名) 可否投票를 실시후 要求事項 미관철시 12.14 同時罷業

〈展 望〉

○ 賃金引上問題는 經濟企劃院 및 主務部處와의 協議가 必要한 事項이므로 出捐機關側의 交涉力에 限界가 있어 12.13까지 妥結되지 않을 경우 同時 罷業突入이 豫想됨.

○ 韓國科學技術硏究院(KAIST)의 罷業時 通信網 전면차단이 豫想되었으나 12.3 勞組 代議員의 爭議行爲에 대한 예비투표 結果 부결되었으며 組合長도 罷業과 關聯한 發言을 한 事實이 없음을 解明한 바 旣報道된 바 있는 株式市場 마비, 大入試 채점 不能等의 事態는 發生하지 않을 展望임.

〈措 置〉

○ 勞動部 主管 對策會議 開催('88.12.9)
- 參加者 : 勞動部 科學技術處 關係官, 6個 硏究機關 勞務管理 責任者
- 討議內容 : 勞使交涉을 통한 妥結方案 摸索等

〈指導方向〉

○ 出捐機關長 責任下에 當事者 交涉으로 紛 糾解決 圖謀

○ 使用者의 交涉力에 限界가 있음을 勘案하여 經濟企劃院, 該當部處, 出捐機關間의 緊密한 協議下에 解決方案 摸索

다. ㈜文化放送 紛糾

〈事業體 槪要〉

· 所 在 地 : 서울시 永登浦區 汝矣島洞 31
· 代 表 者 : 김 영 수
· 業 種 : 放送事業
· 勤 勞 者 數 : 2,300名
· 勞動組合長 : 정기평(勞組員 : 1,026名, '87.12.9 設立)

〈紛糾經緯〉

(1 次)

○ '88.8.26 全勞組員이 "公正放送保障" "社長退陣"等을 要求하며 罷業突入

○ '88.8.29 勞使間 "社長退陣(8.30 辭表提出), 公正放送 協議會 設置"등에 合意하고 紛糾終結

(2 次)

○ '88.11.2 任命한 社長(김영수)의 就任을 反對하며 勞組員 150餘名이 籠城

○ '88.11.3 勞組側에서 新任社長의 選任이 白紙化 될 때까지 出勤 沮止하기로 決意

○ '88.11.23 勞組側이 代議員協議를 開催하고 要求事項貫徹을 위하여 12.1 總會召集키로 決意

(主要要求內容)

株主總會 無效 및 새經營陣 選任

解職者 復職(言論關正時 解職者 174名)

落下傘 人事등 5共非理 剔抉

韓國奬學會法案 撤回(KBS가 所有하고 있는 MBC株式 70% 出捐根據 規定)및 株式의 分散

'88.12.1 勞組側에서 總會召集하여 總罷業 與否에 관한 可否投票 實施(參席 913名, 賛成 690名)

12.14限 要求事項이 貫徹되지 않을시 12. 15. 06:00時를 기하여 全面 罷業키로 決意

指導方向

同 紛糾는 言論政策次元에서 根本的인 解決이 要求되는 事案임

當部에서도 계속 關心을 갖고 勞使間에 원만한 解決方案을 모색할 수 있도록 努力

라. 大成炭座開發㈜ 聞慶鑛業所 勞使紛糾

事業體 概要

· 所 在 地 : 慶北 점촌시 불정동 산 2-1
· 代 表 者 : 김 문 근
· 業 種 : 石炭鑛業
· 勤 勞 者 數 : 1,394名
· 勞動組合長 : 이상복(勞組員 : 1,156名, '76.9.15 設立)

〈紛糾經緯〉

○ '88.3.31 勞使交涉을 開始하여 5.9 優先賃金 11%引上에 合意

○ 5.11 賃金引上에 不滿을 갖고 籠城을 主導한 3名을 會社側에서 解雇

○ 9.7 勞組 內紛으로 團體交涉이 遲延되다가 臨時總會를 開催하여 現 組合長을 選出

○ 10.15 勞組 新執行部가 團體協約, 解雇者(3名)復職 등에 관해 勞使交涉을 가졌으나 決裂되어 勞動爭議 發生 申告

○ 11.1 現地에서 解決方案을 못찾자 勞組幹部 등이 上京하여 本社, 政黨 黨舍에서 籠城

○ '88.11.12 慶北道知事(점촌시장)는 9.7 勞組臨時總會의 召集節次에 瑕疵있음을 理由로 是正命令

(理 由)

'88.9.5 臨時總會 開催時 成員未達로 閉會宣言하였음에도 9.7 臨時總會를 다시 開催하여 現 組合長을 選出한 것은 正當한 節次를 缺如

11.23 會社側에서 解雇者 復職, 勞組專任 1名 增員(現 4名)案을 提示하였으나 勞組側이 拒否

○ 12.6 鑛業所 現地에서 11.28부터 勞使代表가 交涉하던 중 아래와 같이 合意하고 12.7 正常勤務에 臨함.

(合意內容)

解雇者 原職 復職

爭議期間中 賃金 : 1人當 260,000원 支給

賞與金 : 基本給의 515% 支給

家族手當 : 1人當 3,000원 支給

勤續手當 : 1年以上 勤勞者에게 1年에 1,000

원씩 加算

〈指導方向〉

○勞組 組織紛糾 및 勞使紛糾 再發防止

마. "紛糾關聯 廢業"事例 精密調査 結果

○特別監督 實施

－調査對象

세창물산㈜, 綠十字病院, 우리데이타, 새안病院, ㈜원방, 고려남훈병원등 6個 業體

－調査期間 : 88.11.9－11.15(7日間)

－調査結果

大部分의 業體가 經營上 어려움으로 廢業할 정도는 아님에도 勞動組合活動에 대한 嫌惡와 勞使紛糾 등에 대한 忌避方案으로 廢業한 것으로 判斷

○'88.11.24 特別監督 結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地方勞動官署에 指示

－不當勞動行爲 및 金品未支給 등에 대하여 勞動組合法과 勤勞基準法 違反으로 立件 搜査

－搜査結果에 따라 嚴重 依法措置

－廢業前까지의 營業行爲에 대하여 稅務關係 調査가 이루어지도록 管轄 稅務當局에 協調要請

〈會社別 摘出事項〉

會社名	違反內容	適用法規
녹십자병원	○不當勞動行爲 ○有給週休日 未實施(79名) ○夜間 및 休日勤務手當 未支給(10名) ○年·月次 有給休暇 未實施 ○年長勤勞手當 未支給(2名) ○勤勞時間 違反	勞動組合法 第39條 勤勞基準法 第45條 勤勞基準法 第46條 勤勞基準法 第47,48條 勤勞基準法 第42,46條 勤勞基準法 第57條
고려남훈병원	○不當勞動行爲 救濟命令 不履行 ○金品未淸算(10,278千원) －賃金(19名) : 5,217千원 －退職金(17名) : 5,061千원 ○勤勞時間 違反	勞動組合法 第42條 勤勞基準法 第30條 勤勞基準法 第42條
세창물산㈜	○不當勞動行爲 ○金品未支給(33,300千원) －賞與金 : (301名) : 32,267千원 －夜間勤勞手當(警備職2名) : 1,033千원 ○無認可 夜間 및 休日勤勞(女子105名) ○勤勞時間 違反 －13～18歲未滿 勤勞者(54名)에 대한 法定 勤勞時間 超過	勞組組合法 第39條 勞組基準法 第30,46條 勤勞基準法 第56條 勤勞基準法 第55條
㈜원방	○不當勞動行爲 ○金品未支給(29名) : 2,502千원 －年次有給休暇手當 －延長勤勞手當外5件	勞動組合法 第39條 勤勞基準法 第30,46,47,48,59條
우리데이타	○不當勞動行爲 ○金品未支給 : 7,688千원 －延長 및 休日勤勞手當(84名) : 2,828千원 －賞與金(95名) : 4,860千원 ○勤勞時間 違反	勤勞組合法 第39條 勤勞基準法 第30,46條 勤勞基準法 第56,57條

會社名	違反內容	適用法規
우리데이타	女子勤勞者에 대한 無認可 休日勤勞 및 勤勞時間 過多	
새한병원	不當勞動行爲 金品未淸算(79名) : 36,159千원 解雇豫告手當 外5件	勞動組合法 第39條 勞動基準法 第27條의2 46,47,48條

이상 報告를 마치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政府側 報告에 대한 質疑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發言하십시오.

○李海瓚委員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먼저 묻겠읍니다.

지난번에 勞動委員會를 소집할 적에 政府側에서 現況報告 중에 80年度에 淨化措置로 解雇된 勤勞者들에 대한 문제 現況報告를 얘기를 한 바 있었읍니다. 지금 産別勞組 12名이 얘기가 되었는데 그외에 다시 淨化措置로 인해서 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當事者들이 저한테도 여러번 연락이 왔었는데 12名 부분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淨化措置된 여러개 事業場의 勤勞者들이 있읍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資料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먼저 제출을 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詰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長官으로 赴任하기 전의 事項입니다마는 현재 李海瓚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資料는 준비가 미처 안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음 常任委員會때 준비해서 報告드리도록 해주시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다른 質疑 먼저하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金令培 李相洙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洙委員 몇가지 묻겠읍니다.

우선 과거에 賃金 未支給을 이유로 使用者가 拘束된 경우를 보았는데 그런 경우에 勞動部側에서 拘束稟申을 해서 檢察이 拘束令狀을 申請한 것인지 檢察 스스로가 令狀을 申請하신 것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當部에서 惡德企業主라고 그래서 요청해서 拘束稟申을 해서…

○李相洙委員 勞動部에서 직접 요청해서 拘束된 케이스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勞動關係法 違反으로 拘束된 경우는 거의 勞動部에서 직접 申請해 가지고 拘束되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예. 이것이 勞動部에서 拘束稟申을 하고 委員님께서 잘아시겠지만 판단은 檢察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현재 勞動部에서 일선 勤勞監督官에게 拘束을 어떠어떠한 경우에 하라고 指針이 나간 것이 있지요?

○勞動部長官 張永詰 내려간 것이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실례지만 拘束指針이 어떤 경우로 되어 있읍니까? 지금 資料가 있으면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資料를 별도로 드리겠읍니다. 지금 資料를 안가지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세창물산을 비롯해가지고 몇 個 事業體에 대해서 僞裝廢業이라고 判定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난번 國政監査때 僞裝廢業임이 판명되면 法定 最高刑으로 稟申을 올리겠다고 했읍니다. 지금 세창물산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業所에 대해서 僞裝廢業이라고 判定을 내리고 檢察에 送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稟申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러면 勤勞基準局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예.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勤勞基準局長 金基德입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들 一線 地方廳이나 내지는 事務所에서 사실상 僞裝廢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가 곤란했읍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經營上의

問題보다는 勞動組合活動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의 集團行動에 혐오감을 가지고 廢業을 한 것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勞動組合法 39條를 걸어서 立件을 했읍니다.

送致過程에서 여러가지 저희들과 檢察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一線에서 그 내용 전체를 받아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시할 적에는 가장 높은 刑을 받을 수 있도록 檢察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만 지시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送致書類자체는 아직 저희들이 받아 보지를 못한 상태에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 명확치가 않아서 拘束稟申을 안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은 분명한데 拘束稟申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立件 送致하도록만 얘기를 했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렇다면 지난번 國政監査時 調査를 해서 僞裝廢業임이 드러나면 法定最高刑으로 送致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는 틀리잖습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렇습니다. 그러나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勤勞監督官이 할 수 있는데에는 한계가 있읍니다. 특히 人身을 拘束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檢察에 저희들이 필요한 補強搜査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역시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檢事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拘束이 안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檢事가 한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지 勞動部에서 우선 拘束稟申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아까도 報告를 올렸읍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事件記錄이 전부 一線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報告드릴 수는 없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직접 저하고도 一線所長들 하고 廳長들하고 전부 통화를 했읍니다마는 檢察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拘束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수차 했읍니다마는 실제 執行過程에서 拘束된 사람은 없읍니다.

○李相洙委員 과거에 惡德企業主에 대해서 賃金未支給을 이유로 拘束稟申했을 때에는 書面上으로 拘束稟申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書面上으로 拘束稟申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 졌다고 한다면 이번 僞裝廢業부분도 傘下機關에 알아봐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措置가 안되었으면 拘束稟申을 書面上으로 건의할 용의가 있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난번 이쪽 國會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檢察의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했읍니다.

그러나 檢察側에서 저희들 勤勞監督官이 일방적으로 拘束稟申한다고 해서 반드시 拘束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일이 지휘를 받기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러면 拘束稟申을 한 書面上의 근거가 있다는 말인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書面上의 근거는 한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어딘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그것이 녹십자인지… 별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檢事指揮過程에서 拘束은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런 根據書類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만약 자세한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搜査指揮를 받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가지 내용을 별도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李相洙委員 어떻습니까? 國政監査時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알아봐 가지고 拘束稟申을 하지 않은 業體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할 용의는 없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저희들은 충분히 그 근거만 확실하고 이것이 拘束을 할수있는 데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내용이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拘束稟申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아까도 報告들으신 바와 같이 이미 送致가 된 상태인데 그 送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여러가지 勤勞基準法違反事項이라든가 내지는 勤勞組合法違反事項에 대해서 쭉 지휘를 받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냐 라고

사전에 사실은 檢事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稟申자체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長官께 묻겠읍니다.

사실 그동안에 勤勞者들이 勞動組合法 등을 어기면 즉각 拘束되는 반면에 使用者들은 勤勞基準法등을 어겨도 거의 拘束된 일이 없고 罰金이나 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勤勞者들이 勞動組合法만 法이고 勤勞基準法은 法이 아니냐하는 말까지 하고 있읍니다.

제가 勞動部에서 一線 勤勞監督官에게 내려간 勤勞基準法이나 그 밖의 勞動關係法違反事件의 處理指針을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拘束하도록 하는 指針은 한정되어 있어서 實效性이 없어 보이는데 현재 指針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指針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鎬 李相洙委員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勞使對等의 原則과 勞使自律의 原則이 정착되도록 勞動行政의 기본방향을 거기에 두고 앞으로 勞動行政을 꾸려 나가겠읍니다.

방금 말씀하신 拘束에 있어서 勤勞者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企業은 또 方針面에서 問題點을 제기를 하셨는데 勤勞基準法에 대한 앞으로의 勞動行政을 꾸려나가는데 균형있는 집행을 하도록 기하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指針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檢討를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李相洙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長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문제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僞裝廢業이 드러나면 法定最高刑으로 다스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勞動部가 정밀검사를 해서 僞裝廢業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슬그머니 送致만 한 것으로 생각돼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僞裝廢業의 경우는 그대로 送致되고 拘束되지 않으며는 使用主는 罰金 조금 물고 아주 喜喜樂樂하면서 문제를 끝낼 수도 있읍니다.

이런 立場을 고려해서 向後 이런 僞裝廢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措置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鎬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長官께 여쭤 보겠읍니다.

지금 勞動關係法所定 事業主에 處罰條項의 違反事件에 있어서 搜査 및 司法處分의 과정에 대해서 勞動部로서는 어떤 見解를 가지고 있읍니까?

결국 搜査過程에서의 身柄處理나 또는 檢査가 略式起訴 또는 正式起訴 사이에 있어서의 처리가 一般的으로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며는 비교적 事業主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결국 檢察의 태도가 法院에 있어서의 最終的인 量刑決定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때 지금까지 勞動者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의 檢察과 司法의 운영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혹시 韓國勞動界의 실정이나 勞使關係에 있어서의 실정을 勞動部만큼 모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처리가 勞動部와는 동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勞動部에서 봐도 그 정도면 그 사람들의 勞使問題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고 그래서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勞動部長官 張永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명확한 答辯을 드리기는 어렵읍니다마는 盧武鉉委員께서는 또 國會議員이면서도 변호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勞動行政을 운영하고 특별히 勞使間에 不均衡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바탕에서 제가 勞動行政을 집행하겠다 하는 저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많은 助言을 받으면서 勞動者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그런 行政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것으로 答辯에 對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제가 對策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식이 어떤가… 實務擔當者라도 答辯해주시면 좋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鎬 이것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제가 이번에 13代 國會에 와서 勞動委員會에서 委員님들과 함께 勞動行政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고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는 企業하는 분이나 經濟를 專門的으로 하는 분도 앞으로는 勞使間에 평화가 제일 중요하고 또는 勞使間에 平等原則이라든지 勞使間에 對等原則이 안되고는 企業도 안되고 經濟도 아된다 하는 것을 항상 저도 생각을 했지마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바탕위에서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企業側에서 司法府에서 보는 눈하고 勞動行政에서 보는 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읍니다.

그래서 盧委員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認知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勞動行政을 집행하는데 좋은 參考로…

○盧武鉉委員 말하자면 슬그머니 피하시는데 새로 長官님이 오셨으니까 저희로서는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硏究 調査를 하면서 實務者들의 意見을 많이 듣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實務者라도 意見을 한번 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번 國政監査 質疑 자리에서 國會議員의 一方通行만 있었지 도대체 司法府가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분하느냐 왜 檢察이 이와같이 미온적으로 대하느냐 하는데에 대한 國會議員들의 一方通行的인 主張만 있었지 정확하게 勞動部의 見解가 없었읍니다.

소극적으로 國會議員들이 주장하며는 그런 點은 앞으로 是正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며는 불공평하게 미온적인 處分이 있다고 보는 것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새 長官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 實務陣에서는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알고 싶습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李相洙委員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하고 盧委員님께서 주신 말씀하고는 말씀의 표현은 틀리지만 그 흐름은 제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은 피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法條項의 處罰規定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공부를 해서 우리 勤勞者들이 不利益을 받고 企業이 勤勞者들에게 不利益을 줘가지고 勤勞者들이 不利益을 받는다든지 그런 不利益을 주는 企業을 두둔하고 또 刑量을 적게 하는 그런 行政은 펴나가지 않겠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行政을 해나가는데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盧武鉉委員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금 長官께서 하시는 말씀이 本委員이 지금 質問하는 내용이 장래에 있어서의 어떤 처리에 있어서 具體的이고도 명확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피해나가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答辯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역력합니다.

아니면 아닌 대로 저희는 勞動部와 앞으로 國政을 함께 걱정해감에 있어서 勞動部가 이만하면 足하다. 아니면 아니라는 것 그 基本的인 것이 전제되지 않으니까 항상 基本的으로 인식을 共有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委員말 다르고 勞動部 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저는 인식을 共有하기 때문에 그런 答辯을 올렸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말 어떻게 해석할까요? 좋습니다. 오늘 長官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읍니다.

이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해놓고 나서라야 우리도 勞動部를 상대로 잘했니 못했니 얘기를 할수가 있읍니다.

우리가 보기에 檢察은 수고하고 있고 法院도 그만하면 합당한 法的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國會議員들이 勞動部만 닦아세우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基本的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勞動部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못 하며는 當 勞動委員會에서 檢察이나 司法府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檢察의 勞動行政에 대해서 직접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지 않겠읍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報告하신 것 중에서 答을 들

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長官님 마음속에 지금 있는 見解인데 다음 바뀌며는 長官이 되고나서 여러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國會議員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長官이 되고나서 조사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지금 狀況자체가 저희들이 뭐합니다마는 監査 그 班에서 사실은 盧委員님이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을 다음 國政監査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意見交換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李相洙委員님이 말씀하신 結論의 基調나 盧武鉉委員님이 말씀하신 어떤 생각에 共有를 한다 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말에 담긴 뜻을 얼른 알아 차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시면 아마 實務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함께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勞動部가 地方行政官署의 次元에서 품신을 하나 둘 올린다든지 勞動部 스스로 指針을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서 그것을 實務에 있어서 소위품신이나 가서 協議의 次元에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實效性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中央行政部署 次元에서 그와 같은 잘못되어있는 지금까지의 것들을 改善하기 위한 中央部署次元에서의 計劃같은 것을 다음에는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 報告書 三星重工業에 관한 件인데요. 6페이지에 보면 指導方向이라고 해가지고 不當勞動行爲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依法措置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괴롭습니다. 우선 紛糾經緯에서부터 보면 이 紛糾가 88年11月14日에 로소 發生한 것이 아니고 6月2日 당시에 이미 6月中旬부터 籠城이 시작되었거든요. 報告書에 빠져있는 것은 조금 報告書가 불충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가지 문제중에서 依法措置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까지 여러가지 措置事項에 보면 명확한 依法措置는 또 안 나와 있읍니다.

이것 한번 물어보시지요. 勞動組合의 解散命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읍니까?

○勞動部長官 張永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

勞政局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勞動組合에 대한 解散命令은 舊法에서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87年11月에 法이 改正이 되면서 그 條項이 削除되어서 없읍니다.

○盧武鉉委員 완전히 削除되었읍니까?

地方勞動委員會 承認을 받는 절차라든지 이것 다 없어졌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다 없어졌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말하자면 소위 幽靈勞組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件이 幽靈勞組라고 못박는 것이 아니고 소위 幽靈勞組에 대해서 아무런 法的인 制裁方式은 우리 勞動法에는 현재 없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勞政局長 다시 答辯드리겠읍니다.

소위 幽靈勞組問題가 나왔을때에는 그 당해 기존 勞動組合과 幽靈勞組라고 주장하는 側과 합의해서 그 勞動組合을 확대개편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야돼는 그런 方法 이외에는 그것이 일단 勞使間의 組織紛糾로 밖에 볼수 없기때문에 달리 法的인 制裁를 가할수는 없다고 보겠읍니다.

○盧武鉉委員 勞動組合의 創立總會가 없었다거나 設立申告의 文書가 僞造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審査權이 있다는것이 勞動部의 見解아닙니까? 그렇지요? 設立申告書가 接受되었을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읍니다.

○盧武鉉委員 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勞動部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무런 制裁措置가 불가능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勞動組合이 일단 結成이 되어서…

○盧武鉉委員 일단 結成이 아니고 申告書 자체가 僞造되었다거나 또는 創立總會 자체가 存在하지 않았을때 말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지금 勞動組合은 申告하면 申告書類에 瑕疵가 없는 한 申告證을

交付하고 正式 勞動組合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行政官廳은 申告된 書類에 의해서 瑕疵가 있느냐 없느냐를 審査를 해서 申告證을 形式的으로 交付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은 形式的 要件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實質的으로는…

○盧武鉉委員 그것은 확실합니까?

앞으로 勞動組合 設立申告에 있어서 그와 같은 事由로 반려되는 일은 일체 없겠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法上 規定되어있는…

○盧武鉉委員 創立總會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소위 勞動行政官廳 또는 地方行政官廳에서 審査하는 일은 일체 없겠지요?

또 실제로 거기에 勞動組合員으로 加入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勞動組合員의 捺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加入 여부에 관해서 일체 調査가 없지요. 그렇게 못박아도 되겠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形式的인 要件만 맞으면…

○盧武鉉委員 形式的인 要件이라는 審査는 實質的으로 도장을 찍은 여부와 加入여부 또는 創立總會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여부에 관해서까지도 조사를 하지않는 것이 지금 勞政局長이 말씀하신 形式的 審査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申告書類들이 지금 말한 것과는 다른 審査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각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없겠네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제가 알기로는 形式的인 要件만 맞으면 전부 申告證이 交付가 되었을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렇다면 勞政局長으로서 문제가 있읍니다.

勞動部를 거쳐서 저희가 받은 資料中에 勞政業務에 관련된 各 市·道·郡·區廳의 勞政業務에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申告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해서 다 반려되었던 사실이 있는데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그것은 形式的 要件이 具備가 안되었을 경우는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補完要請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것도 施行令上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公務員이 재량껏 할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盧武鉉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質問을 이 쯤에서 멈추고 조금 더 찾아보고 나중에 보완해서 묻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나중이라는 말씀은 오늘 중 나중을 의미합니까?

○盧武鉉委員 예.

○委員長 金令培 예. 알았읍니다.

李委員 말씀하세요.

○李相洙委員 제가 보충해서 묻겠읍니다.

여기 勞動組合法 30條를 보니까 行政官廳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勞動組合의 經濟狀況 기타 關係書類를 제출하게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施行令보니까 調査를 하는 경우로서 勞動組合의 組職間 또는 組職內部의 紛糾가 야기되어 調整 指導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가지고 지금 三星의 경우에 딱 들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三星의 組職紛糾가 지금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新聞보니까 勞動部에서 調査團을 파견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李相洙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答辯드리겠읍니다.

勞動組合法 30條의 行政官廳의 調査가 規定이 되어 있고 施行令上에 조사하는 경우가 몇가지로 열거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각 管轄行政官廳이 조사를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러한 行政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三星重工業 勞使紛糾에 관해서도 이것은 管轄官廳이 慶尙南道가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 勞動部에서는 慶尙南道에 대해서 該當勞動組合의 運營事項을 조사해서 非民主的인 사항이 있으면 이를 是正을 하고 조속히 組織紛糾를 수습하도록 누차에 걸쳐서 지시한 바가 있읍니다.

○李相洙委員 지시에 대한 業務報告는 올라온 것이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아직 正式 報告는 오지를 않았고 所管이 다르기 때문에 行政官廳 즉 市道에서는 직접 지도할 責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또 저희 地方官署는 勞動組合을 직접 管轄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指導責任은 없읍니다. 따라서

慶尙南道와 협조해서 조속히 紛糾가 수습되도록 지도를 하는데 紛糾經緯라든지 이런것을 調査報告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地方官署를 통해서 報告올라 온 것을 방금 報告드린 資料중에 간략하게 나오는것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저희 地方官署의 報告에 따르면 당초에 18名의 勞動組合員으로 設立申告가 돼 있었는데 그동안 이러한 지도 결과에 따라서 10日 현재로 組合員數가 420名으로 확대되었다 하는 報告를 받은 바가 있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저희하고 같이 同僚委員으로서 行政府에 여러가지 質疑를 하던 입장에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質疑를 하게 되었읍니다.

長官께서는 아마 가신지 며칠 안되니까 내용을 아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80年度에 요즘 公職者 解職問題에 대해서 政府가 명예회복과 동시에 補償을 해 주기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80年度에 우리 勞動界 전체의 그당시에 숙정된 사람들이 실지 幹部級에서 約 183名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80年度에 勞使紛糾가 좀 심해서 그 당시에 拘束됐던 勞動組合幹部 내지는 勞動者들도 있었읍니다.

반면에 勞使紛爭으로 인해서 그당시에 해고된 여러 勞動組合 幹部들이 事業場에서 많이 있었읍니다. 요즘은 新任長官께서 특별히 유념해야 되리라고 本委員은 우선 생각을 합니다.

183名이라고 하는 幹部들은 거의 타 地域 내지는 中央에서 勤務를 하던 분들 또는 事業場에서 勞動組合運動을 하던 사람들 따라서 거기서 또 數十名은 三淸敎育도 간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政府로서는 拘束者나 또는 勞使紛爭으로 인해서 80年度에 해고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응분의 責任을 져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勞使紛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無政府 상태에서 도리어 거꾸로 말하면 政府가 그런 紛爭이 일어나도록 놔뒀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당시에 勞使紛爭으로 인해서 해고된 勤勞者들도 政府로서는 公職者 解雇者와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상당한 補償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具體的인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80年度에 勞動法을 國保委에서 一方的으로 改正을 해서 全國에 있는 地域支部가 118個가 있었읍니다. 하루아침에 그 地域支部가 전부다 해산이 되고 거기에서 종사하던 勞動組合 幹部들이 일터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읍니다. 이렇게 방대한 勞動組合에 충격을 주었고 또 組織의 형태를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組合을 약화시켰다고 하는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읍니다.

實例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979年度에 韓國勞總의 組合員이 110萬名입니다. 그런데 81年度에 組合員이 85萬3,000입니다. 約 30萬 정도 삼소됐지요. 또 1985年度에가서는 더 줄어가지고 77萬5,000입니다. 韓國勞總의 組合員數가…

이렇게 第5共和國에 있어서 勞動組合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勞動組合을 弱化시켰다고 하는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새로 赴任하신 張長官께서는 이와 같은 지난날의 크나큰 오점을 勞動界에다가 남겨놓은 第5共和國… 따라서 그당시에 權力에 의해서 또한 不法에 의해서 183名이라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숙정을 당했읍니다. 이것은 勞動部로써 또 長官께서는 특별한 여기에 대한 責任을 느끼셔서 이분들에게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補償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것을 本委員으로써는 촉구합니다.

그리고 80年度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拘束者 또는 勞使紛爭으로 해서 그당시에 해고된 사람들 이분들에게도 조사를 해서 명예회복과 아울러 거기에 따르는 補償을 政府로서는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두겠읍니다. 長官께서는 本委員이 말씀드린것을 앞으로 어떠한 對策을 세우시겠는지 마음에 각오가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金炳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0年度 이후부터 여러가지 勞動界의 현황을

제가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확고히 드릴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그러나 金炳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읍니다. 그래서 現況을 좀 더 검토해 보고 제가 판단을 해서 다음에 報告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金炳龍委員 예.

○李海瓚委員 관련되는 質問으로 몇가지 補充質問을 하겠읍니다.

당시 80年度에 淨化措置를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勞動部에 여러가지 資料要請을 했었읍니다. 지난번 國政監査때도 資料要請을 했었고 그전에 常任委에서도 資料要請을 했었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資料가 제출되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좀 說明을 해 주십시오.

長官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관계되는 實務者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政局長 答辯드리겠읍니다.

80年度 淨化措置關係書類는 書類保存年限이 지난 관계로 현재 전혀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移管書類目錄에 移管했다는 그런 記錄만 나오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어디로 移管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이 主務局에서는 總務系統으로 移管이 되고 總務系統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燒却할 것은 燒却하고 永久保存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保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一般書類들은 保存年限이 3年내지 5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혀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읍니다.

○李海瓚委員 이것에 관련되는 資料는 한장도 없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廢棄目錄은 가지고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시 淨化措置의 主務部署는 어디였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당시 勞動廳이고 그 勞動廳안의 勞政局입니다.

○李海瓚委員 勞政局이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李海瓚委員 당시 勞政局長이 누구였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지난번 資料로 제출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당시의 勞政局長은 鄭東佑 現 企劃管理室長이 勞政局長이었는데 그 당시에 國保委에 派遣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事實上 勞政局長은 그 당시 空席이었더랬읍니다.

○李海瓚委員 勞政局長이 그러면 國保委일만 했읍니까? 勞政局長業務는 안 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勞政局의 局長을 대행한 사람은 누구였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시 勞動組合課長이었읍니다.

○李海瓚委員 勞動組合課長?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李海瓚委員 그러면 그런 關係者들의 證言이나 얘기를 들어 보아야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발견한 것이 勞總에 그 당시의 事業報告書가 있읍니다.

거기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勞動廳의 淨化內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나와 있는 것이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 資料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淨化指針아닙니까? 이것이…

勞動廳에서 보낸 勞動組合淨化指針입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指針인데 이것은 내려 보낸 指針이고 이것에 따른 各級 淨化委員會에서의 指針處理에 대한 結果報告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물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아뭏든 이 指針內容을 보면 그동안까지 勞動部가 얘기하기로는 이 淨化措置는 勞動部가 한 사항은 아니고 勞總에서 自律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까지 말씀을 해 오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알았는데 이 勞總事業報告이지요? 80年度 勞總事業報告資料에 보니까 그 淨化措置에 대한 指針을 勞動廳에서 80年8月21日인가

요? 8月21日 상당히 방대한 量의 指針을 내려 보냈단 말이지요.

이것에 의해 가지고 勞總에서 各級 淨化委員會를 만들고 해 가지고 191名이 淨化가 되었고 그 중에는 自進辭退書가 물론 한 70餘名이 포함되지만 이 淨化措置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 保安司나 合同搜査本部에 끌려가 가지고 강제로 辭退書를 쓰고 한 이런 事例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三淸敎育까지 받았던 말이지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앞에 金炳龍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단히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0年度의 解雇措置 記者들도 있었고 公務員도 있었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勤勞者들에 대해서 極端的인 표현을 쓴다면 흔히 요사이 言論聽聞會에서도 얘기하듯이 記者虐殺이라고 하는데 그와 똑같은 그런 勞動者들에 대한 일련의 虐殺이 된 이런 행위였었는데 이에 관련된 資料가 지금 勞動部에도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진상을 밝혀 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原職復歸라든지 被害補償을 해 주는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이 제일 적합할까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물론 勞動廳에서 淨化指針을 내려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淨化指針에 依據해서 具體的으로 淨化對象者를 선정을 하고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各級 勞動團體에서 自體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淨化指針內容을 저도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勞動組合幹部로서 적합하지 못 한 사람은 勞動組合幹部職에서 辭任을 시키고 原職에 復歸시켜서 勤務하도록 그렇게 하라 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事實上 自體淨化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自體淨化者들은 原職까지 解雇가 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얘기를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지금 資料가 없이 이 문제를 진상을 밝혀서 復職시킨다 든지 名譽回復을 시켜 주려면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檢證이 필요한 이런 聽聞會같은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淨化對象者중에 선정이 통고된 자는 통고받는 즉시 辭職書를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선정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不應하는 者는 關係機關에 그 名單을 通報해서 調査處理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關係機關이라는 것은 당시에 뭘 가르키는 것이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具體的으로 파악을 못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여기보면 辭職을 불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戒嚴司나 保安司로 끌려갔었어요. 피해 당사자들도 원풍모방의 방용석支部長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저희 事務室에 왔었는데 끝까지 辭職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關係搜査機關에 끌려가서 강제로 辭職書를 쓰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여기보면 이 關係機關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勞動廳같으면 勞動廳에 報告하라고 했을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勞動業務에 關係되는 것이 勞動廳이 아닌 다른 關係機關이라는 것은 쉽게 想定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이 資料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委員會內에서 이것을 가지고 聽聞會를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읍니다. 어차피 당사자들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 숫자 190餘名에 대한 身元은 지금 파악할 수 있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지금 저희 勞動部로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파악이 안되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李海瓚委員 그러면 身元도 파악이 안되고 처리내용도 파악이 안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復職이라든가 被害補償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현재로서는…

○李海瓚委員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 밖에는 근거가 되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動部에는 資料는 일체 없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당사자들의 주장밖에는 다른게 없는 셈인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현재 그렇다고 보겠읍니다.

○李海瓚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을께요. 당시 1980年12月에 改正된 勞動組合法 그것이 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만든 法이

지요? 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만든 法일 텐데 그 法 附則에 보면 80年8月20日이후 이 法 施行日까지 해산된 勞動組合의 事態 또는 제명된 勞動組合任員은 32條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 또는 任員 改選命令 받은 자로 본다 하는 附則이 있읍니다. 그당시 80年12月31日 改正된 組合法에 보면… 결국 이것은 4個月 전부터 실시한 이런 淨化措置에 대한 遡及立法이라는 말이지요.

遡及立法이거든요. 國家保衛立法會議法 자체가 違憲性을 낳는 法인데 國家保衛立法會議라고 하는 것이 大統領令에 의해가지고 立法機關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違憲性 여부의 대상이 되는데 그 法의 附則은 그나마 또 遡及立法까지 했단말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淨化措置內容을 法律的으로 合理化시켜 놓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당시의 勞動關係 이 문제와 관련된 實務者들이 대개 現職에 계실것이고 피해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고 勞總에서도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證言을 종합하면 윤곽과 내용은 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점에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勞動部에서 이제라도 지난번에 企劃室長님한테도 제가 非公式的으로 이야기 했지만 이제라도 이것에 관련된 勞動部가 모을 수 있고 聚合 할 수 있는 일체의 資料를 빨리 委員會에 提出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資料를 기본으로 해서 얘기가 돼야 서로 善意的인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피해자들의 얘기만 듣고 勞動部側에서는 우리는 資料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발뺌만 하게 되면 이 자체는 큰 社會的인 문제로 까지 飛火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가지고 오늘 이 委員會가 끝나고 나서도 勞動委員끼리는 서로 論議가 있어야 되겠지만 관련되는 資料를 가능한 限 최대로 모아주실 것을 正式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炳龍委員 지금 李海瓚委員님께서 여러가지 補充發言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동감하면서 新任으로 長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내용을 勞動部의 關係職員들과의 물론 協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80年度에 勞使紛爭으로 인해서 때로는 勞動組合幹部들이 解雇 拘束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가지고 第5共和國에 絶對的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면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旣히 第6共和國에서 第5共和國이 人間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러한 違法行爲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를 合理化시키겠다라는 의지에서 現 政府에서 解雇者 또는 言論… 이러한 분들에게 補償 또는 名譽回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勞動界의 많은 勞動組合幹部 또는 일선에서 勞動運動을 하던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解雇된 사람들에 대해서 政府로서는 道義的인 책임을 져 달라 하는 것입니다. 長官께서는 좀더 積極的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서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勞動部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때당시에 억울하게 解雇 拘束된 이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政策을 강력하게 세워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이상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現代重工業에 대해서는 油印物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長官께서 答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實務責任者가 누가 간략하게 현재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勞政局長입니다.

金炳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現代重工業勞使紛糾에 대해서 간략하고 報告말씀 드리겠읍니다.

現代重工業은 船舶建造業을 하는 會社로서 勤勞者 數가 현재 2萬2,800餘名입니다. 이중에서 勞動組合員數는 1萬9,125名으로 되어 있읍니다. 먼저 紛糾原因을 말씀드리면 지난 6月 8日 勞使間에 團體協約 締結을 위한 교섭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렬이 된 바가 있읍니다. 具體的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을 보면 勞組側에서는 현재 賞與金이 500%로 돼 있읍니다마는 100%를 추가해 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退職金을 累進制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使用者側에서는 會社 형편상 들어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團體協約이 결렬된 바가 있었읍니다. 지난 8月2日 勞組側에서 이

와 관련해서 爭議發生申告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12月2日 勞組側은 行動計劃을 마련하고 中食時間을 이용해서 약간의 怠業을 하는등 實質的인 爭議行爲에 돌입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行動計劃을 보면 12月6日에는 一部部署가 作業拒否를 하고 12月8日에는 全勞組員이 爭議行爲 拒否投票를 행하며 12月12日부터 12月12日 오늘입니다. 13時부터 全面罷業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行動計劃을 세웠었는데 지난 12月8日 爭議行爲 拒否投票結果 可決이 돼가지고 오늘 13時를 기해서 전면 罷業에 돌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報告된 바에 의하면 16時30分 현재 일단 해산을 한 것으로 報告가 됐읍니다. 앞으로 勞使兩側이 성실하게 交涉에 임해서 조속하게 원만히 合意해서 해결하도록 積極的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李仁濟委員 그 문제 本委員이 조금만 補充하겠어요. 이主要 防衛産業體 指定은 商工部長官이 합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勞動部에서도 의견을 표시하나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勞動部에서도 그 指定防衛産業體 指定審議委員會의 「맴버」로 들어가 있읍니다. 원래 주된 審議는 國防部와 商工部가 하면서 勞動部도 거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現代重工業은 人員이라든지 또는 賣出額으로 볼 때 防衛産業部分이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몇%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읍니다마는 防衛産業部分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主要防衛産業體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使用者는 防衛産業體인데 너희들 罷業은 못할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 交涉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防衛産業體를 罷業으로부터 보호할 社會的 필요가 있다는 문제하고 이 事業主가 相對方이 그러니까 勤勞者側이 罷業權을 못 갖고 있다고 할 때 團體交涉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틀려질 것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法改正案에서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改正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防衛産業體로 지정이 안되도록 勞動部에서 積極的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李仁濟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各 部處間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李仁濟委員 잘해 주세요. 오히려 相對方이 罷業權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문제가 복잡하지 않게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本委員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金炳龍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質問하겠읍니다.

녹십자病院 고려남훈病院 世昌物産 기타 不當勞動行爲한 事業場이 많이 있는데 新任 長官께서는… 同僚委員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勞動界가 앞으로도 역시 이와 같은 不當勞動行爲를 主務官廳인 勞動部가 강력하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勞使紛爭이 더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녹십자나 고려남훈病院이나 또는 世昌物産이나 이러한 會社들은 보면 病院 또는 中小企業인데 여기에 보면 18歲 미만도 있는데 法에 立案을 했으면 하나의 본보기로서도 違反業體에 대해서는 강력한 法의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勞動部로서는 關係機關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적당히 해서 企業主가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罰金이나 幾百萬원 내고 그냥 놔둔다고 하면 企業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그러한 방법으로서 자기네 會社의 정책을 세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勞動法을 改正할 때에 앞으로 이러한 不當勞動行爲에 대해서는 罰則을 더 강화시키려는지 그것은 委員들이 할 일이겠읍니다마는 우선 현재 주어진 法條項으로 보아도 3年 정도의 懲役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위반하는 業體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他 企業人들도 각성을 하고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관심 또는 勞動部의 指示事項을 준수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력하게 집행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質疑 다 끝났읍니까?

추가로 한가지 묻겠는데요. 80年度에 억울하게 解雇된 勞組幹部들에 대한 救濟策을 勞動部에서 강구하고 있읍니까?

長官이 잘 모르실테니까 次官이 答辯해 주세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勞動部次官입니다.

지금 韓光玉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희 勞動部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80年度에 職場까지 強制解職된 12名에 관해서 名譽回復과 實質的인 補償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그 이전에 있었든가 아니면 勞動組合 幹部만 그만 두게 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그러면 그 12名에 대한 名單은 當部에 보관이 되어 있읍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있읍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그런데 다른 名單은 보관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그것은 당시 勞動廳에서 勞組幹部와 동시에 그 勞組幹部가 속해 있던 職場까지도 나가도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社會 全般的으로 당시의 言論 또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 억울하게 解雇된 사람에 대한 復職問題 名譽回復問題가 앞으로 강구되어야 되는 것이고 來年度 豫算에도 부당하게 解雇된 公務員들에 대한 補償策이 豫算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勞動部의 答辯을 들어보면 그 당시의 關係書類가 폐기되었다 근거가 없다 따라서 被害者의 신고를 받지 않으면 전혀 진상을 알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과연 만족할만한 補償과 名譽回復對策이 세워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本委員으로서는 심히 유감될 뿐만 아니라 當部의 信憑性 信賴性問題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委員들께서도 계속 質疑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적당하게 없다고 하는 그런 말로써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當部로서 솔직하게 당시의 書類가 있으면 있는대로 내놓고서 補償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내가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잘 알겠읍니다.

○金炳龍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補充質問하지요.

방금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12名은 문제가 아니고 80年度에 國保委에서 여러가지 淨化指針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달한 機關은 지금은 勞動部지마는 그때는 勞動廳이 勞動團體에다가 하달을 했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勞動組合幹部들을 解職시키고 또 때로는 解雇된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그 당시 國保委는 뚜렷하게 그 엄청난 權限行使를 하면서 실지 우리 勞動團體에 대해서는 政府가 無防備狀態로 그냥 싸우라고 놔 두었기 때문에 勞使間의 분쟁이 점점 더 커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違法했다 해가지고 그러한 組合幹部들을 法에 구속을 시켜서 때로는 懲役을 간 사람도 있고 또 훈계를 받아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마지 못해서 解雇된 사람도 있고 強壓에 의해서 辭表를 낸 사람도 있고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勞動運動을 하는 사람들이 좀 과격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생각하는 각도가 다른 사람도 있으나 다르다고 해서 根本的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勤勞者를 代辯하다 보니까 강력한 발언도 할수 있고 때로는 강력한 示威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로서는 그 당시에 가만히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휘어잡을 때 다 違法이다 해가지고 懲役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第5共和國이 그와같은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現長官이 책임지라기 보다는 잘못된 것을 現政府가 새로이 해나가기 위해서 補償을 해주고 명예를 다시 復權시켜 주라고 하는 方針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것을 長官께서는 확실하게 전부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張永喆 金炳龍委員님 李海瓚委員님 韓光玉委員님께서 문제제기하신 여러가지 상황을 제가 충분히 들었읍니다. 次官이 答辯하신 중에 열두분에 대한 말씀 外에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勞動部로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李台燮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台燮委員 政府出捐硏究機關 勞動爭議問題입니다. 거기에 보면 勞動爭議發生申告한 것이 6個 勞組인데 그 다음에 보면 韓國科學技術硏究院은 爭議行爲에 대한 豫備投票로 否決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爭議申告가 없는 것입니까?

申告狀態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李委員님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드리면 KAIST는 일단 爭議申告는 되어 있읍니다만 爭議申告 이외에 실제 罷業 怠業등 爭議行爲에 들어갈 때는 組合員의 總意를 묻는 可否投票를 행하게 되는데 이 KAIST에서는 組合員의 總意를 묻기 前에 代議員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豫備投票라고 했읍니다. 거기서 罷業에 들어가는 것이 否決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組合員들도 이 代議員들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아서 다른 機關은 몰라도 KAIST는 罷業에 들어갈 것같지 않다 이렇게 報告드린 내용입니다.

○李台燮委員 알겠읍니다.

다음에 三星重工業問題인데 지금 勞組는 김무연이라는 사람이 신청한 勞組가 合法的인 勞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李台燮委員 위재학씨를 支持하는 사람들은 김무연씨의 反對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지금은 위재학씨 支持 勤勞者들만 농성하고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台燮委員 그리고 공장이 세군데인데 이 세 작업장을 다 묶어서 勞組가 하나로 되어 있읍니까? 작업장마다 따로 되어 있읍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하나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企業別로 自律的으로 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로 하고 있읍니다.

○李台燮委員 工場別로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組合의 運營形態에 따라서 工場別로 支部나 「브렌치」를 두어서 運營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기존 勞組의 組合員數가 420名으로 확대되었읍니다.

○李台燮委員 그래서 현재 약 200名이 籠城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동안 중단되어 왔었으나 지난 12月10日 土曜日부터 작업이 再開되고 있읍니다.

○李台燮委員 서울서 籠城하는 분들은 없읍니까? 그리고 있다면 어디서 하고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아직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勞總에서 하고 있었읍니다.

○李台燮委員 다음에 소위 僞裝廢業한 6個業體에 대해 特別監査를 실시했다는데 지금 이 6個業體가 전부 廢業중에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사했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사실 廢業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꼈읍니다. 事前에 저희가 國會 常委에서도 國監때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地方勞動官署에서 조사해 놓았던 내용과 그후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일부 한두사람 事務職들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서류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 間接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稅務署라든지 이런데에서 필요한 사항도 조사했읍니다.

○李台燮委員 6個業體중 농성중인 業體도 있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지금 녹십자하고 世昌物産 우리테이타 이 세곳으로 기억하며 이 사람들이 같이 聯合해서 行政官署도 찾아다니고 있읍니다.

○李台燮委員 나머지 勤勞者들은 어떻게 되었

읍니까?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완전히 합의가 되어가지고 전혀 다른 生業에 종사한다고 판단하는데는 고려남훈病院하고 원방株式會社 이렇게 두군데로 생각됩니다.

(韓光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李台燮委員 合意됐으면 왜 여기서 立件 送致를 했지요?

○勞動部勤勞基準局長 金基德 合意가 되었더라도 이미 과거에 어긴 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認知를 해서 할 수 없이 送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李台燮委員 現代重工業問題는 우리 李仁濟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重要防衛産業體로 되어 있기 때문에 罷業을 할 수가 없는 業體인데 罷業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도 있는데 상당히 法節次에 따라서 紛糾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지만 不法的 實力行使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不法爭議行爲를 하고 있는 業體의 상황에 대해서 勞動部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까?

이것이 公權力確立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까지도 비약이 되겠읍니다마는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勞動部長官 張永鎬 勞動部長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不法的인 爭議에 대해서는 法精神에 따라 基本的으로는 法의 節次에 따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것을 勞使間에 평화스러운 共存을 위해서 서로 대화로써 꾸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調停役割을 勞動部로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勞動行政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法精神을 지켜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行政을 꾸려나가겠읍니다.

○委員長 金令培 盧武鉉委員 發言하십시오.

○盧武鉉委員 아까 하던 것을 조금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읍니다. 勞政局長 答辯해 주시지요. 아까 하던 대로니까요.

報告書 6「페이지」에 보면 三星重工業에 관한 件인데요. 地方勞動官署의 調査結果 紛糾原因이 뭐냐 했는데 사실상 勞組活動을 不履行하고 있고 자유로운 勞組加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紛糾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報告가 온 모양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사실상 勞組活動을 不履行했다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例를 들어서 사실상 創立總會 같은 것도 없었다는 것도 포함되고 있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일단 18名의 勤勞者가 勞動組合 設立申告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勞組活動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盧武鉉委員 실제로 創立總會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안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行政官廳에서 形式的인 요건이 맞으면 設立申告를…

○盧武鉉委員 形式要件에 맞고 안맞고 간에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不當勞動行爲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例를 들면 設立申告書類의 審査要件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例를 들어서 社主의 使嗾를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僞裝組合을 만들어서 正常的인 勞動組合의 設立申告書의 접수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不當勞動行爲가 되지도 않겠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읍니다.

○盧武鉉委員 검토를 안해 봤읍니까?

今年度 6月2日의 사건이고 韓國의 소위 代表的인 獨占資本으로 알려져 있는 三星 내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勞動組合 안된다 라고 말해서 적어도 勞動行政에 대해 勞動三權을 보장하는 憲法精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이 企業에서 벌어진 여러번 반복된 문제 끝에 오늘날 발생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아직 검토도 안해보셨읍니까? 그것이 勞政行政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喜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읍니다.

○盧武鉉委員 이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報告書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指導方向 맨끝에 보면 不當勞動行爲發見時 依法措置하겠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報告用文句이고 1年뒤에도 依法措置하겠

다 라고 미래형으로 나오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안나올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관한 한 그럴 可能性이 있읍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 勞動部 本部에서 직접 관할하는 勞動組合이 아니고 慶尙南道에서 관할하는 勞動組合입니다. 그래서 慶尙南道에서 設立申告를 받아가지고 申告證을 교부했고 또 慶尙南道에서는 그동안 設立申告上에 하등의 하자가 없었다는 報告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盧武鉉委員 얘기를 자꾸 어렵고 까다롭게 끌고 가시는데요. 業務監督權은 미치지 않는 獨立機關입니까? 慶尙南道에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이와 같은데에 있어서 業務協調나 기타 또 勞動部傘下 行政官廳에서는 전혀 조사할 사항이 되지도 않습니까? 慶尙南道에서 접수한 것이 適法하다면 申告證을 발부한 것이 適法하다면 거기를 관할하는 勞動部傘下 行政官廳에서 이와 같이 말썽이 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이미 그 企業이 公開的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勞組設立의 방해로 보여질만한 혐의가 뚜렷한 사건에 있어서 調査를 指示하거나 또는 調査結果에 대해서 좀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감독하거나 하는 것이 勞動部 本部의 業務所管事項이 아닙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맞습니다. 그래서 11月에 제가 業務指示를 하고 報告받은 사항은 이미 報告를 드렸읍니다.

○盧武鉉委員 報告받은 사항이 이런 정도란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報告받은 사항중에는 不當勞動行爲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정도의 報告라는 것이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잘하신 것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따져 묻느냐 하면 묻는 것을 사람 멋적게 만들려고 자꾸 회피하실려고 하시고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안드렸읍니다. 盧武鉉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非民主的인 勞組運營事項은 是正되도록 行政指導를 강화할 것이고 또 不當勞動行爲 부분도 발견되는 즉시 엄중하게 依法措置하겠다 이렇게 報告를 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적어도 勞動法體系 全般에 관해서 勞動制度 全般에 관해서 정면의 도전을 하고 있는 企業에서 그와 같은 도전의 일환으로써 그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것 중의 하나 昨年 7·8月때 이미 여기에서는 書類奪取事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시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파악하지 못했읍니다.

○盧武鉉委員 三星重工業에 있읍니다. 특히 三星「그룹」의 여러 系列企業에서 書類奪取事件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와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그 중의 하나라 報告되는 마당에 이 報告가 불성실하니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러고도 잘한 것처럼 하시니까 어떻게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앞으로 勞動行政이 이와같이 잘못된 사례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라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報告하는 자세에서 부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없기도 한 것아닙니까?

그리고 本委員도 깊이 硏究 안해서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지적해 둡니다. 勞動法 第39條의 不當勞動行爲에 해당되는가 與否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特別司法警察官인 勤勞監督官의 직무취급규정에 혹시 勞動事件과 관련해서 一般 刑事法規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을때 그와같은데 대해서 告發措置를 하는 것이 合理的인지 아닌지 혹시 근거의 규정은 없는지 조사해 보시고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 사건에서 勞動者들이 逮捕 監禁행위가 있었음을 만천하에 호소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新聞에도 여러번 報道된 바 있으며 또한 他人의 正常的인 勞動組合活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일때 그것이 旣存 勞組가 아니어서 法 第3條5項에 해당 안되는데 그러나 正常的인 勞組의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文書만 가지고 장난을 쳤다면 이 또한 業務妨害行爲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관한 관련된 자료로서는 소위 三星「그룹」 秘書室에서 작성된 對策文書가 나와 있읍니다. 그 文書에 의해서 고의성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읍니다.

그와같은 것들은 전부 조사했어야 되는데 一般 刑事犯에 해당되는 것이 勞動事件과 관련되었을 때는 勞動部는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도 다음에 명백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묻다가 중단했던 것중에서 設立申告書를 接受했을 때는 형식적 審査만 하고 그래서 文書가 僞造된 與否 또는 創立總會가 있었던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식적 審査의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간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勞動組合法施行令 第8條1項2號에 보면 設立申告書 또는 規約의 記載事項중에 누락은 형식적 審査에 해당되지만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記載와 사실이 다른 것을 허위라고 말하는데 그 사실은 總會가 있는 與否 組合에 加入한 與否 등등이 문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本委員도 전에 착각을 하고 있다고 뒤에 李仁濟委員께서 깨우쳐 주셔서 비로서 알게 된 것인데 아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사할 義務가 있게 되어 있읍니다.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補完指示를 해야하고 補完이 안될 때는 返戾하게 되어있고 이미 接受되어서 申告證이 發給되었는데 그후에 이와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通知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總會가 없었다면 이것은 補完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總會를 다시 열어서 새로운 서류를 만들면 모르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補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를 토대로 지금 約 400名의 組合員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補完될 수 없읍니다. 새로운 總會를 해가지고 새로운 文書를 接受시키는 또 한번의 수고를 해서 또 유령 勞組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그때에 가서 어쩔 도리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점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을 추궁해 들어가야 됩니다.

현지의 勞動行政官廳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眞僞與否를 밝혀서 처리했어야 합니다. 만일에 몰라서 이점에 관해서 착안하지 않았다면 勞動部에서 이 점에 관해서 새로이 指揮監督權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여부를 調査하시고 그 調査여부에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秘書室에서 작성한 對策文書까지도 그 조사의 證據資料나 參考資料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역시 報告되어야 할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金炳龍委員 한가지 묻겠는데 昌原市의 88年 6月2日 구용회등 4名 해가지고 組合을 設立申告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昌原 第1工場이에요 第2工場이에요? 工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잘모르겠는데…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각 工場에 몇 名씩 같이 構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金炳龍委員 88年6月2日 4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그것은 勞動組合設立人員數입니다.

○金炳龍委員 그러면 4名이 구성했다는 얘기입니까?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1·2工場 합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金炳龍委員 그러면 4,500名 從事하는데 4名이서 했다는 얘기지요?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예. 그렇습니다.

○李台燮委員 김무연外 18名 구용회外 4名 위 재학外 9名인데 그것이 任員의 숫자인지 總組合을 결성한 사람의 숫자인지 두사람 이상이면 勞動組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얘기해 주십시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總組合員 숫자입니다.

○金炳龍委員 그런데 사실은 一線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勞動部에서 직접 다 관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昌原市에 申告書내고 道에 내고 또 그렇게 절차를 갖추어서 中央으로 올라오는데 일일이 잘잘못을 여기에서 가린다는 것도 사실 힘든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여기 사오천名 되는데서 4名이서 組織을 했다 하는데에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中央으로서도 勞動部로서는 여기에 대한 措置를 어떻게 해라 하기에는 힘이 들

것입니다. 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같이 잘못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是正하기 위해서 이번에 勞動法도 改正을 하고 또 申告證 내는 것도 우리가 申告로서 끝내자 또 申告함과 동시에 바로 效力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勞動部에서 특히나 勞政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事實與否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읍니다.

○勞動部勞政局長 具然春 알겠읍니다.

○李海瓚委員 지금 勞政局長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아까 미처 이 資料를 檢討를 못했었는데 이 資料를 보니까 지금 앞에 盧武鉉委員께서 말씀하신 관련된 資料가 여기 있군요. 三星秘書室에서 나온 사회분위기를 틈탄 問題勢力의 動向과 이에 대한 對策이라는 秘書室의 文件이 있고 이 文件에 보면 問題勤勞者들에 대한 勞務管理對策으로서 ABC 3단계에 관한 文件이 있어요.

그리고 또 三星重工業勞組設立에 관한 勤勞者들 격리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經費內譯書도 文件이 여기에 있어요. 보면 공봉규씨같은 사람은 濟州道로 데리고 가서 술을 사주고 濟州道에서 못 나오도록 막고 하는 濟州道 離脫防止를 위한 空港涉外해가지고 空港保安室에 5萬원을 주었고 부두 保安室에도 5萬원을 주고 이런 具體的인 文件이 우리의 손에 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부서의 勞政局長이라는 사람이 조사 안해 봐서 모르겠다.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勞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答辯하시겠읍니까?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擔當實務者들에게 싫은 소리 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거의 勞動委員會가 시작된지가 6個月이 넘었고 이제는 서로 알만한데 그런 식으로 答辯해서 넘어가질 委員會이고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勤勞者들에 대한 탄압을 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 新聞에도 간헐적으로 비쳤고 이런 文件이 勤勞者들 자신이 議員들 事務室에 가지고 올 정도로 돌아다니는데 該當 主務官廳의 勞政局長이 그런 식으로 미봉적인 얘기나 하고 계속 앞으로 그럴 것입니까?

○勞動部長官 張永喆 제가 대신 答辯드리겠읍니다.

李海瓚委員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資料를 직접 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앞으로 行政을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우리 委員님들께 報告를 드리고 또 서로 방향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勞動行政을 하겠읍니다.

앞으로 저희 勞動行政公務員들에 대한 指導監督을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最近勞使紛糾등懸案報告와 이에 대한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남은 議事日程이 法案處理 9件이 있읍니다. 勞動部長官이하 幹部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韓國勞動硏究院法案을 提案說明하시고 委員 質問에 答辯하시는데 필요한 要員들만 남아 계시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黨間의 意見調整을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읍니다.

(18時35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金令培	金東仁	金政吉
梁慶子	李康熙	李台燮
李相洙	李海瓚	韓光玉
金在光	盧武鉉	李仁濟
金炳龍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門委員	卓英鎭
立法審議官	宋芳燮

○出席國務委員

勞動部長官	張永喆

○出席政府委員

勞動部

次官	李龍俊
企劃管理室長	鄭東佑
勞政局長	具然春
勤勞基準局長	金基德

職業安定局長 金 濟 憲
職業訓練局長 禹 誠
勞動保險局長 姜 斤 熙

【報告事項】

○常任委員變更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涉團體
金政吉	動力資源	勞動	民主正義黨
張永喆	勞動	動力資源	〃

(12月10日字)

委員名	舊委員會	新委員會	交涉團體
南載熙	勞動	文敎公報	民主正義黨
李在晃	動力資源	勞動	〃

(12月12日字)

○議案回附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

(12月7日 李康熙議員外 60人 發議)

社內勤勞福祉基金法案

(12月7日 李康熙·南載熙·張慶宇議員外 60人 發議)

障碍者雇傭促進法案

(12月7日 梁慶子·張永喆 張慶宇議員外 59人 發議)

技能奬勵法案

(12月7日 李台燮 辛卿植議員外 59人 發議)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2月7日 金東仁·金文起·李敏燮·沈明輔·朴佑炳議員外 59人 發議)

職業安定法中改正法律案

(12月7日 金東仁議員外 60人 發議)

이상 6件 12月8日字 回附됨.

心身障碍者雇傭促進法案

(12月8日 李秉禧議員外 34人 發議)

12月12日字 回附됨.